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가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각 중앙관서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「국가재정법」 개정(제43조의2 신설)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기존 시행령의 예산 재배정 관련 사항이 법률로 상항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,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산 재배정 업무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로 상항된 시행령 조항들(제17조 ①,②,③)을 삭제

나. 각 중앙관서의 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세출예산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(안 제17조 ①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(인용조문 수정 필요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제1항, 제2항,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7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「한국재정정보원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에 세출예산 재배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중 “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17조”를 “「국가재정법」 제43조의2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예산의 재배정)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「국고금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.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17조(예산의 재배정) <u><삭 제></u>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「한국재정정보원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에 세출예산 재배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7119